

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

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○ 대상 기업 및 사업장 : (주)영풍문고 신림포도물점

업종	기업명	소재지	대표자	권고*의 내용 및 기간	권고 미이행 내용
서적,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	(주)영풍문고	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	최영일	지정일(2019.10.18.) 이전에 동방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에 따라 초·중·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, 그 이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(20.11.30.까지) 동안 초·중·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권고	'19.6.1.부터 영풍문고 신림포도물점 내부에 스타디북(대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중소기업)을 입점시켜 초·중·고 학습참고서를 지속적으로 판매
서적,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	(주)스타디북	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30	송규철		

* 서적,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·고시 제5호(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)